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규모계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0. 4. 10. ~ 4.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을 “제26조제1항제5호가목(같은 조 제6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을 “제26조제1항제5호가목(같은 조 제6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를 “수의계약(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추정가격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5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7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100분의 5이상으로”를 “100분의 5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

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100분의 10이상으로”를 “100분의 10 이상으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로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를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일의 범위내에서”를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중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를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제2호,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6항,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의 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제4호(제35조제4

항의 개정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생 락)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u>제26조제1항제5</u> <u>호가목</u>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 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 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 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 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 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 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 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 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 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 <u>제26조제1항제5</u> <u>호가목(같은 조 제6항을 포함한</u> <u>다)</u> ----- ----- ----- ----- ----- ----- ----- ----- ----- ----- -----.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생 락)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② ----- -----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

-----.

1. (현행과 같음)
2. ----- 제26조제1항제5호가목(같은 조 제6항을 포함한다)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

-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
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 라. (생략)

2. ~ 5.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

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

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

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

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 ② (생략) <u><신설></u>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u>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여성기업</u>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장애인기업</u>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사회적협동조합</u>,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u>자활기업</u>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u>마을기업</u> 중 <u>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u>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u>
---	--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생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 해당하는 자(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3. (생 략)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 략)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수의계약(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추정가격이 -----

----- 해야 -----.

----- 기획재정부령으로 ----- 그렇지 않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 4. (생 략)

⑤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
로 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 략)

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
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
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에
따른 -----
----- 대해 -----

----- 100분의 5 이상
으로 -----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
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
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계약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
----- 100분의 10
이상으로 ----- 해야 ---

다. <단서 신설>

② ~ ⑩ (생략)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 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 보증) ①-----

-----.

2. ----- 100
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3. (생략) ② ~ ⑤ (생략) 제55조(검사) ①<u>법 제14조제1항의</u> <u>규정에 의한</u> 검사는 계약상대자 로부터 <u>당해</u> 계약의 이행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u>14</u> <u>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u> 다 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u>7일의 범위내에서</u>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58조(대가의 지급) ①<u>법 제15조</u>	<u>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u> <u>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u> <u>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u> <u>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u> <u>에는 1천분의 75) -----</u>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검사) ①<u>법 제14조제1항에</u> <u>따른 -----</u> ----- <u>해당 -----</u> ----- <u>14</u> <u>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u> <u>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u> <u>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u> <u>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u> <u>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u> <u>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u> <u>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u> <u>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u> <u>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u> ----- <u>7일(본문에 따라 7일</u> <u>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u> <u>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u>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	---

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112조(심사)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심사·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

----- 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 않는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2조(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u>견을 들을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5212